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. 10. 24 선고 2017가단1110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10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건물 약 70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17. 6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남균

별지